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9월 8일
-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5년 9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아울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9조)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현행 운영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부칙으로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함.
- 5개의 장(章)에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항 중 상위법 등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3개의 장(章)과 11개의 조문의 구성으로 변경함.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근거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동법 제60조제3항에 근거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종전에는 개최 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임기 규정(임기 2년, 한차례 연임)을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계획을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또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일반적인 재정운용 원칙, 기금운용 및 회계 관련 규정 일부 조항이 삭제되나 이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운영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하는 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00 호
----------	---------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아울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9조)
- 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5. 8. 7.~8.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지방재정 또는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일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로 운영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10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공통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